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공동상속인 [법일반]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형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동발명자 [특허]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전원이 공유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하며, 따라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상의 구체적 사상 또는 원성에 직접 관여한 실질적 협력자이어야 함.

공동발명 [특허]

2인 이상의 자가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 공동발명이라 함.

공동대리 [지재권 일반]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2인 이상에게 귀속하는 대리형태.

공동권리자 [법일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2인 이상의 권리 향유 주체를 의미함. 공동권리자의 경우 처분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음.

공동결의안 [지재권일반]

WIPO 산하 각종 상설위원회에서 타결한 관련 규범 또는 규정의 권고안을 매년 9월경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WIPO 총회 시 파리동맹과 공동결의로 각국에서 이 규범 또는 규정에 따라 자국의 법제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에서 채택되는 것. 대표적인 것으로 1999년 9월 채택된 유명상표보호규범과 2000년 9월 채택된 상표사용권 규정안 두 가지가 있음.

공공의 질서나 신랑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디자인]

공공의 질서나 신랑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2호)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